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000호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 제공 시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 담당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교육 실시 의무 부여(안 제3조)

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대상자·제공 목적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보험회사등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의 제3자 정보 제공현황을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안 제6조)

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개인정보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사용통계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 팩스 : (044) 201 - 5587

3) 전자우편(이메일) : demi2114@korea.kr, pkm0903@korea.kr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정보험과(전화 : (044) 201-4871, 48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